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문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근로기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근로기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미숙아의 범위,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미숙아 범위 등 마련(안 제12조의2)

나.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(안 제12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미숙아의 범위 등) ① 법 제74조제1항 후단에서 “미숙아”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3(고위험 임신부의 범위) 법 제74조제7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”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적용례)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되,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[별표 3]

유산,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관련 질환(제12조의3 관련)

연번	질환명	질병코드
1	조기진통	O60
2	분만관련 출혈	O67, O72
3	중증 임신중독증	O11, O14, O15
4	양막의 조기파열	O42
5	태반조기박리	O45
6	전치태반	O44, O69.4
7	절박유산	O20.0
8	양수과다증	O40
9	양수과소증	O41.0
10	분만전 출혈	O46
11	자궁경부무력증	O34.3
12	고혈압	O10, O13, O16
13	다태임신	O30, O31
14	당뇨병	O24
15	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	O21.1
16	신질환	N00-N23, N00-N08, N10-N16, N17-N19, N20-N23 ※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(임신, 출산 및 산후기)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
17	심부전	I00-I52, I00-I02, I05-I09, I10-I15, I20-I25, I26-I28, I30-I52 ※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(임신, 출산 및 산후기)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
18	자궁 내 성장 제한	O36.5
19	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	O23.5, O34.0, O34.1, O34.4, O34.8, O41.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미숙아의 범위 등) ①</u> <u>법 제74조제1항 후단에서 “미숙아”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</u> <u>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</u> <u>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</u> <u>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</u> <u>에 입원한 신생아를 말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</u> <u>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추가로 부</u> <u>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</u> <u>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</u> <u>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</u> <u>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</u> <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3(고위험 임신부의 범위)</u> <u>법 제74조제7항에서 “고용노동</u> <u>부령으로 정하는 유산, 조산 등</u> <u>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”란 별</u> <u>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</u> <u>여성 근로자를 말한다.</u>